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안내

2022년 『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』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구체적인 지원대상·요건 등에 관하여 누리집 공지사항 『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』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

- ☐ (사업 개요)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*에서 **취업애로청년**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, 최대 1년 지원
* 성장유망업종, 미래유망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
- ☐ (사업 규모) 총 14만명

2 지원대상

- ☐ (지원 기업)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* 단, 성장유망업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재생에너지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
- ☐ (취업애로청년)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**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~34세 청년**
- ☐ (특례 청년) 단, ① 고졸 이하 학력 청년 ②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⑤ 종료 후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 ⑥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청년 ⑦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 등은 **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**

3 지원요건

- ☐ 2022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
- ☐ 해당 기업에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

4 지원수준

- ☐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월 80만원, 1년 최대 960만원 지원
- ☐ (지원금 신청기한)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된 후,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하여야 함

5 지원신청 방법

- ☐ 기업은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에서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 신청* → 운영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→ 청년 채용(채용자 명단 제출) → 지원금 지급 신청
* 청년 채용 이전에 반드시 사업참여신청 하여야 함. 예외적으로, 사업참여신청 이전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 채용일(단, '22.1.1.이후 채용)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하여야 함

붙임 서울고용센터 관할 운영기관 목록

연번	운영기관명	연락처
1	(주)메이크인	02-2291-7070
2	(주)잡모아동대문지점	02-2273-8886
3	(사)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	02-2230-2123
4	인크루트알바콜주식회사	02-2186-9059
5	스텝스주식회사	02-2178-8079
6	(사)여성중앙회총로여성인력개발센터	070-4048-6709
7	(주)한국직업개발원중부지사	02-6336-0546